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.

발 의 자 : 고민정·김문수·박정현
김영배·박범계·김원이
문정복·안규백·김동아
진선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·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, 2026년 현재 통합 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, 학교급 간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한편,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, 지역 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거점으로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또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학교

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하고 연속적인 학교 체제로서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,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,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,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신설함(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).

나. 학교의 병설, 무상교육·의무교육, 취학의무, 교직원의 구분,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, 학교회계의 설치,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, 학과 및 학점제 등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함(안 제5조부터 제48조까지).

다. 초등학교·중등학교·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,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초중학교(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5. 중고등학교(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제5조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”를 “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중학교 및”을 “중학교, 초중학교,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중고등학교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 및”을 “초등학교·중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 및”으로, “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”을 “초등학교·중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”로, “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”를 “초

등학교·중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”로, “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초등학교에”를 “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에”로, “초등학교를”을 “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초등학교”를 “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초등학교에”를 각각 “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초등학교를”을 “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”로, “중학교에”를 “중학교 또는 초중학교·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에”로, “중학교를”을 “중학교 또는 초중학교·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을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기술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기술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”로, “제42조 및 제46조”를 “제42조·제46조 및 제54조의3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중 “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”를 “중학교·고등학교,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, 초등학교·중고등학교 또는 초중학교·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를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·특수학교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고등학교”를 각각 “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5조”를 “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및 제55조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6절의2(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절의2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

제54조의2(목적 등) ①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은 제38조에 따른 초등교육을, 중학교 과정은 제41조에 따른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은 제41조에 따른 중등교육을, 고등학교 과정은 제45조에 따른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③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중학교·고등학교를 폐교한 후 해당 학교를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로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

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4조의3(수업연한) 초중학교의 수업연한은 9년, 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

제54조의4(입학자격 등) ① 초중학교·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,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.

②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,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.

③ 그 밖에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,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4.·5. (생략)	제2조(학교의 종류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초중학교(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5. <u>중고등학교(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6.·7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제5조(학교의 병설) <u>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 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(並設)할 수 있다.	제5조(학교의 병설)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</u> ----- -----.
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<u>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</u>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	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① ----- <u>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</u> 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<u>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</u> ----- -----.

1. ~ 4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12조(의무교육) ① (생 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, 중학교 및 초등학교 ·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· 경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 ·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 ·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 · 경영하거나,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 ·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 ·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의무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중학교, 초중학교,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중고등학교 및
-----.

③ -----
-----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초중학교 · 중고등학교 및 ----

-----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초중학교 ·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----
-----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초중학교 ·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----
-----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초중학교 ·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취학 의무) ① 모든 국민
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
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
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
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
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
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
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
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
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
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
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
입학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도
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
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
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
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
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
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
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
야 하고,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
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취학 의무) ① -----

-----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
의 초등학교 과정에 -----
----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
초등학교 과정을 ----.

② -----

----- 초등학교 또는
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-----
-----, -- 초등학교
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
에 ----- 초등학교 또는 초중
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에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초등학교 또는 초중
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을 -----
----- 중학교 또는 초중학
교 ·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
에 ----- 중학교 또는 초중학

④ (생 략)

제19조(교직원의 구분) ① 학교에
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.

1.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
· 고등공민학교 · 고등기술학
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· 교
감 ·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.
다만,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
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
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
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27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)

- ①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
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
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
제23조 · 제24조 · 제26조 · 제39
조 ·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
하고 수업연한(授業年限)을 단
축(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)
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
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

교 ·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
을 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교직원의 구분) ① -----
-----.

1.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
· 고등공민학교 · 고등기술학
교 · 초중학교 · 중고등학교 -
-----.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)

- ①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
교 · 초중학교 · 중고등학교 ---

---제42조 · 제46조 및 제54조
의3-----

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, 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0조의2(학교회계의 설치) ① 국립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(學校會計)를 설치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-----

-----중학교·고등학교,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, 초등학교·중고등학교 또는 초중학교·고등학교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학교회계의 설치) ① -----
-----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교·특수학교 -----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

-----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초중학교·중고등학

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48조(학과 및 학점제 등)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.

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·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.

③ 고등학교(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)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(이하 “고교학점제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교·특수학교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학과 및 학점제 등) ① 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-----.

② 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-----

-----.

③ -----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및 제55조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6절의2 초중학교 및
중고등학교

제54조의2(목적 등) ①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은 제38조에 따른 초등교육을, 중학교 과정은 제41조에 따른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은 제41조에 따른 중등교육을, 고

<신 설> <신 설>	<u>등학교 과정은 제45조에 따른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 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 <u>③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초 등학교·중학교 또는 중학교· 고등학교를 폐교한 후 해당 학 교를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로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 의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 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제54조의3(수업연한) 초중학교의 수업연한은 9년, 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</u> <u>제54조의4(입학자격 등) ① 초중 학교·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 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 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 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, 제27조 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 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 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</u>
--	--

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.

② 중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,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.

③ 그 밖에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,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